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7.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9.

심영석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 김상현 · 문순규  
박해정 · 성보빈 · 오은옥 · 이우완 · 이원주 · 이정희  
이종화 · 정길상 · 정순욱 · 진형익 · 최은하 · 한상석  
의원(18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0.27.)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심영석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에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확대 마련으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의 내용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6조, 제8조, 제10조)

## 다.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입법예고(2022.10.19.~10.25.) 결과: 제출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종덕)

### 가. 개정의 필요성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의 경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며 입법 형식에 맞춰 조문을 추가·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임.

###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함.
- 안 제3조제2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목을 ‘시장의 책무’로 변경함.
- 안 제4조~제5조는 입법 체계에 맞게 현행 제4조와 제5조의 순서를 변경함.
- 안 제6조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경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
- 안 제8조 및 제10조는 띄어쓰기 등 조문을 수정함.

#### 다. 검토의견

- 「창원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는 창원시 수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구조대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고자 2019. 10. 15. 조례 제1250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난구조활동 참여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법 제30조 후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며, 기타 띄어쓰기 등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해양사고에 대한 수난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법 형식에 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4. 질의·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 없음